B.E. 2548(2005)년 보건부고시(제293호)
식품보조제

식품보조제를 소비하는 보호자를 보호하고 학술적 원칙에 따라 올바른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한다.

B.E. 2522년(1979) 식품법 제5조 및 제6조 (3), (4), (5), (6), (7), (10)의 개인의 자유에 관한 규정과 태국 헌법 제 29조, 제35조, 제39조, 제48조, 제50조에 따라 보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항. B.E. 2544(2001)년 9월 26일자 마늘제품에 관한 보건부고시(제242호)를 취소한다.

제2항. 식품보조제는 영양분이나 기타 물질을 함유한 일반적인 식품을 먹는 것에 추가하여 사용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식품보조제는 건강 증진 혜택을 기대하는 소비자를 위해 일반적인 식품 형태(전통적인 식품)를 사용하지 않는 정제, 캡슐, 분말, 조각, 액체 또는 기타 형태로 되어 있다.

제3항. 이 고시에서 영양분 또는 기타 물질은
(1) 비타민, 아미노산, 지방산, 미네랄 및 식물 또는 동물성 제품
(2) 농축물, 대사산물, 성분 또는 (1)의 물질 추출물
(3) (1) 또는 (2)의 물질을 모방한 합성 물질
(4) (1), (2) 또는 (3)의 물질의 여러 성분을 혼합한 것
(5) 식품의약품청이 지정하고 식품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타 물질 또는 대상

제4항. 식품보조제는 품질 또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식품이며, 라벨은 사용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에 앞서 라벨 사용에 대한 승인 요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1) 식품 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식품의약품청이 발표하는 목록에 따라 필수 성분이 포함된 식품보조제를 판매 또는 수출 또는 생산하기 위한 식품 등록증을 제출한다.
(2) 식품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식품의약품청이 명시하는 라벨을 사용하기 위한 신청용 증거와 증빙 문서를 제시함으로써 (1)에서 명시된 것이 아닌 중요한 성분을 함유한 식품보조제를 위한 라벨 사용 허가를 신청한다.

제5항. 식품보조제는 다음과 같은 품질이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물질에 대한 특정한 특성을 보유해야 한다.
(2) 식품위원회 승인과 함께 식품의약품청이 발표한 검출 병원성 미생물 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최확수법(MPN)에 의한 식품 1g당 박테리아 유형 대장균이 3개 이하여야 한다.

(4) 미생물, 잔류물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과 기타 독성 물질, 오염물질 또는 수의과 약물은 경우에 따라 “보건부” 고시에서 정한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15% 이상의 비타민 또는 미네랄이 있어야 하고, 비타민 또는 미네랄을 제공할 의도의 식품보조제의 경우 6세 이상의 일일 섭취최대 권장 섭취량(타이 RDI)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규정되지 않은 비타민 또는 미네랄은 식품위원회 승인과 함께 식품의약품청 고시에 따라야 한다.

제6항. 식품첨가제 사용은 식품첨가제에 관한 “보건부”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제7항. 판매용 식품보조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식품 생산 및 보관에 있어서 생산 방법, 도구 및 식기에 관한 “보건부”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제8항. 식품보조제 용기사용은 용기에 관한 “보건부”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제9항. 식품보조제 라벨표기 B.E. 2545(2002)년 5월 30일자 라벨에 관한 보건부고시(제252호)(No.2)에 의해 개정된 B.E. 2543(2000)년 9월 19일자 라벨에 관한 보건부고시(제194호)의 제3항 및 제5항의 준수 면제를 조건으로 이 고시의 제10항 및 제12항 준수 등 라벨에 관한 보건부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제10항.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보조제 라벨표기의 문구는 태국어로 해야 한다. 그와 함께, 외국어 문구도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1) 식품명. “식품보조제” 라는 단어를 식품명의 일부나 그와 함께 첨부해야 한다.

(2) 식품 일련번호

(3) 다음과 같이 경우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

(3.1)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경우 판매를 위해 제조업자 또는 포장업자의 이름과 위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조업자 또는 포장업자의 회사 이름과 주소를 대신 표시할 수 있다.

(3.2) 수입 식품의 경우, 수입업자의 이름 및 위치와 제조업자의 국가를 표시해야 한다.

(4) 포장되는 식품보조제의 수량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4.1)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식품보조제는 포장 개수가 표시되어야 한다.

(4.2) 액체 식품보조제는 순 부피가 표시되어야 한다.

(4.3) 고형 식품보조제 또는 기타는 순 중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5) 식품보조제의 활성 성분 이름과 수량 그리고 주장하는 성분은 보충제 라벨에 표시되어야 한다.

(6) 방부제를 사용한 경우 “방부제 사용”이라는 문구

(7) 경우에 따라 사용될 경우 “천연 색소 첨가” 또는 “합성 색소 첨가”라는 문구

(8) 경우에 따라 “천연 조미료”, “모방 천연 조미료,” “합성 조미료,” “천연 합성 조미료”라는 문구가 사용된다.

(9)[1] “규칙적으로 적합한 비율로 모든 5개 식품군을 먹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문구는 굵은 글씨로 한다. 또한 표 바탕 색상과 다른 생상의 명료하고 두꺼운 글씨로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지 못한다.” 라고 표기해야한다.

(10) 사용 지침

(11) 보관 지침 (있을 경우)

(12) 소비 유통기한 종료 연월일 또는 식품 섭취가 여전히 가능한 연월일. 90일 미만 보관할 수 있는 식품보조제의 생산을 위한 훌륭한 품질 또는 기준, 생산 연월일 및 소비 만료 연월 그리고 식품이 훌륭한 품질 또는 기준을 유지기까지의 연월. 경우에 따라 “생산된”, “유통기간 경과된” 또는 “~전까지 소비되어야 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보관 기간이 9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문구. 날짜는 순서대로 표시한다.

위 (12)에 따른 메시지는 용기 하단에 표시한다. 라벨표기 문구와 메시지가 있는 위치 라벨이 있어야 한다.

(13) 건강 강조 표시 및 식이 경고 (13)에 관한 보건부고시에 따른 식품보조제 소비에 관한 경고

제11항. 라벨의 건강 강조 표시는 건강 강조 표시 및 식이 경고에 관한 보건부고시에 따라야 한다.

제12항. 소비자에 판매되지 않는 식품보조제 라벨은 태국어로 된 문구여야 한다. 수입 식품보조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문구는 영어로 표시되어야 하고 적어도 제10항 (1), (2), (3), 및 (4)항에 언급된 세부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13항. 생산업자와 수입업자는 이 고시가 발효되기 전에 마늘 제품이나 식품보조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고시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세부 내용이 고시에 따르지 않은 것일 경우, 그 날로부터 2년 내에 고시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지만, 이 고시가 발효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제14항[2].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다음날부터 90일 이후로 유효하다.

B.E. 2548(2005)년 12월 15일 고시

---

1) (9) 식품보조제 (제2호)에 관한 B.E. 2550년 “보건부 고시(제309호)에 의해 개정

2) 관보 제122권/특별호 150편/2쪽/2005년 12월 28일

아누틴 찬야위라꾼
공중보건부 장관 위임

난타나 /작성
2006년 1월 6일

B.E. 2550년 보건부고시(제309호) 식품보조제(No.2)[3)]

제2항. 본 고시 전 식품보조제 라벨 사용이 허용된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본 고시에 따라 라벨을 수정해야 하며, 종료 시까지 동일한 라벨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본 고시의 유효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관보 제124권 / 특별호 188편 / 21쪽 / 12월 3일